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107호의2 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##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

| ※ 뉘쪽의 삭성방법을 읽고 삭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
| 기 본 사 항  | ① 사업장관리번호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 |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| [ ]해당<br>[ ]비해 |  | 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에 따름)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 | ③ 사업장명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 | ④ 사업장소재지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 | ⑤ 담당자      | 성명:<br>전화번호:   |  | (전자우편 주소              | ≥:   |       | )       |
|  | ⑥ 근로자성명    |                |  | ⑦ 근로자<br>주민등록번호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 | ⑧ 배우자 출산일  | 년              | 월 일  | ⑨ 분할사용 (              | 여부 [ | ] 아니오 | [ ]예    |
| ⑩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기간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년<br>년   | 월 일 ~<br>월 일 ~        |      | 월     | 일       |
| ①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<br>(급여지급액이 없으면 "없음"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<ul><li>您 통상임금<br/>(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산정기준: [ ]시급 [ ]일급 [ ]주급 [ ]월급 (기타 ]<br>통상임금: 원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기타 )    |
| ③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<br>(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월  | 시간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「고용보험법」 제71조 및 제7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.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| 확인자 사업장명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E                     | ᅢ표자  | (٨)   | 명 또는 인) |
| ○○ <b>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</b> 귀하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|

## 작성방법

- ◎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・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.
  - 1.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.
  - 2. ②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    - ※ 자세한 사항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.
  - 3. ⑨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.
  - 4.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. 만약,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⑧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"예"라고 표시해야 합니다.
  - 5. ⑪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(지급예정인 경우 포함)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, 없으면 "없음"이라고 적습니다.
  - 6.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.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, 주급, 일급,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"○"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(주급, 일급, 시급)을 적습니다.
    - ※통상임금: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6조와 「통상임금산정지침」(고용노동부예규) 참조 「통상임금산정지침」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<법령정보실-예규>에서 검색 가능
  - 7.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(일급인 경우 일, 주급인 경우 주, 월급인 경우 월 등)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,
    -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